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284회 제2차 정례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
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1. 12.

운영위원회 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1. 12.

운영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배지훈의원 외 7명
- 발의일자: 2021. 11. 25.
- 회부일자: 2021. 12. 3.
- 검토기간: 2021. 12. 3. ~ 12. 9.(7일간)

2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(법률 제17893호, 2021.1.12. 전부개정)」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실효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3. 개정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
 - 지방자치법 제42조 → 제51조
 - 지방자치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 → 제126조 내지 제129조
 - 지방자치법 제117조 → 제131조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, 제126조 내지 제129조, 제131조
- 나. 비용추계: 비대상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(법률 제17893호, 2021.1.12. 전부개정)이 전부개정 되어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에서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이 변경되어 문장을 정리하는 것으로,
-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위반 사항이 없고, 상위 법령개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.

<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>

【 관련 법령 】

□ 지방자치법

제51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제126조(직속기관)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(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),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제127조(사업소)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28조(출장소)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29조(합의제행정기관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31조(하부행정기관의 장)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, 읍에 읍장, 면에 면장, 동에 동장을 둔다. 이 경우 면·동은 행정면·행정동을 말한다.